

흑인법(code noir)의 식민지성: ‘호모 사케르’ 만들기

문 중 현

1. 들어가며

이탈리아 정치철학자인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은 고대 로마법에 등장하는 “호모 사케르”(homo sacer)를 벌거벗은 생명(nuda vita), 즉 “살해할 수 있지만, 희생물로 바칠 수는 없는 생명”¹⁾으로 정의했다. 희생물로 바칠 수 없는 생명은 정상적인 법질서에서 배제된 생명이기애 이러한 생명을 살해한 자라도 법의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의 근본 범주를 주권과 벌거벗은 생명의 구분에서 찾는 아감벤의 이론은 서양 정치의 근본적 범주는 동지와 적의 구별이 아니라 벌거벗은 생명/정치적 존재, 조예/비오스, 배제/포함이라는 범주쌍이라 주장한다. 배제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은 생명은 언제나 주권 권력에 포섭되어 있는데, 호모 사케르는 법질서의 내부에 있으면서 외부에 있는 이중적, 모순적 위상을 동시에 보유한 생명으로 정의된다. 아감벤은 자연적 생명인 조예(zōē)와 법적, 시민적 지위를 보유한 생명 비오스(bíos)로 구분한다. 호모 사케르는 비오스에서 배제당하고 조예에 머무르며, 모든 권한을 박탈당한 ‘벌거벗은 생명’이다. 이들은 외부의 존재라는 낙인을 받은 채, 체제 안에서 존재하고 지배당하는 존재이다.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에서 그리스 로마시대에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유대인 수용소, 안락사에 이르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했던 호모 사케르들을 제시하면서 주권 권력을 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모 사케르들 중 흑인과 식민지인은 공백으로 남겼다. 유럽에서는 영토국가(état territorial)에서 인구국가(état de population)로 전환되며 근대적 주권국가가 수립되고 있을 때, 식민지에서는 흑인을 주권자에서 배제하는 법률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흑인 노예를 유럽 식민자들이 만들어

1)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서울: 새물결, 2008), 177쪽.

낸 호모 사케르로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령 식민지 노예제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흑인법(Code noire)은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 법이 아닌 왕령(Edit 또는 Ordonnance)이며, 이름도 의미가 불명확해 검은 법, 흑인 법, 노예 법 등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1848년 흑인법 폐지는 올바른 것이 실현되어 마침내 나쁜 것은 영원히 사라졌다는 역사 인식을 낳았고, 부끄러운 식민지 노예제도의 역사를 망각할 수 있었다.²⁾

잊혀던 흑인법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기억법들(lois mémorielles)이 연이어 제정되던 2004년 5월 21일 일명 토비라법(loi Taubira)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서부터였고, 특히 루이 살라-몰랭(Louis Sala-Molins) 1987년 출간한 『흑인법 혹은 가나안의 고난』(Le Code Noir ou le calvaire de Canaan)이 재간행되어 정치적, 역사적 쟁점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었다. 국제 흑인 위원회(Comité international des peuples noirs: CIPN), 마르티니크 배상을 위한 국제 운동(Mouvement international pour les réparations Martinique: MIR), 98년 행진 위원회(Comité Marche 98) 등 노예의 후손들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에서 흑인법은 노예제와 식민주의 압제의 역사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노예제 역사와 기억을 위한 위원회(Comite pour la memoire et l'histoire de l'esclavage: CPMHE)가 노예제를 반인륜범죄로 규정한 '2001년 5월 10일 법'을 근거로 설치되면서 노예제의 역사는 공론장에 등장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치인도 흑인법의 역사에 개입하였다.³⁾ 시라크(Chirac) 대통령은 2006년 1월 엘리제 대통령 궁을 방문한 고등학생들과 함께 5월 10일 노예제 폐지 기념의 날 제정을 축하하는 행사에서 노예무역과 흑인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술을 역사 교과서에 포함할 것을 약속했고, 다음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르코지(Sarkozy) 대통령 역시 2008년 5월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노예제의 역사를 다룰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2) Laurent Dubois, "Histoires d'esclavage en France et aux États-Unis", *Esprit*, 2(2007). pp. 70-73.

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문중현, 「탈식민시대 프랑스의 노예제 기억과 역사 - '노예무역, 노예제, 노예제폐지 기념의 날' (Journée nationale des mémoires de la traite, de l'esclavage et de leurs abolitions)을 중심으로-」, 『프랑스사 연구』, 48호(2023).

프랑스 대혁명이 진행되던 중 발생한 아이티 혁명의 결과 1794년 2월 법령에 의해 폐지된 프랑스의 노예제는 1802년 나폴레옹에 의해 부활하였다가 최종적으로 1848년에 4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 노예제 폐지는 1803년 덴마크, 1823년 칠레, 1829년 멕시코, 1833년 영국 등 다른 유럽과 식민지에 비교해도 늦게 완성된 셈이다. 물론 프랑스에서 흑인법 이전에도 흑인법과 유사한 노예제를 지탱하는 법률로 폭력과 전쟁, 약탈과 포획, 매매 등을 통해 만들어진 노예를 통제,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였다. 노예노동은 아테네 민주정의 경제적 기반이었고 라티퐁디움은 로마의 경제적 기반이었다. 기독교인을 노예화할 수 없다는 기독교 윤리의 전파와 함께 노예제는 중세 이래 그 경제적 중요성이 사라졌지만, 지중해를 중심으로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노예무역은 사라지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가사노예(Esclave domestique)는 1300년 이후, 점차 사라져 적지만 보상을 받는 하인(classe de serviteurs)들로 대체되어갔다. 16세기 몽펠리에와 루실롱(Roussillon)에서 노예해방에 관한 공증문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노예는 프랑스 땅에서 사라졌고, 18세기 작성된 관습법전은 프랑스 땅에서 노예를 소유한다는 완전히 금지했는데 프랑스 땅은 이제 ‘자유’와 동의어가 되었다.⁴⁾ 17세기 프랑스 왕국의 모든 신민이 자유민이며, 점차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요구하면서 자유를 확대해 나아가던 메트로폴리스에서의 상황과는 달리 유럽인들이 정복한 식민지에서 노예제는 식민지 경제를 성장시키는 핵심 생산관계로 정립됐다. 이러한 식민지 노예제는 기본적으로는 유럽의 중세 노예제와 무슬림 세계의 노예제 그리고 아프리카의 노예제들에 기원하는 다양한 성격의 제도가 변주되면서 자리 잡았다.⁵⁾

이 논문에서는 ‘호모 사케르’라는 개념에 기대어 흑인이자 노예였던 아프리카 이주민에게 사회적 지위와 의무, 노예의 주인이자 지배자가 지닌 권리 등을 규정한 1685년 루이 14세 치하 프랑스에서 제정된 흑인법을 살펴볼 것이다.⁶⁾ 흑인법은 메트로폴리스인 프랑스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에 적용된 새로운 법률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흑인법은 프랑스에서 최초로 흑인=노예라는 등식을 성립시킨 법률이

4) Christian Delacampagne, *Histoire de l'esclavage* (Paris: Le Livre de poche), 2002, p. 109.

5) 염운옥, 『낙인찍힌 몸-흑인부터 난민까지, 인종화 된 몸의 역사』 (서울: 돌베개, 2019), 104~112쪽.

6) 흑인법은 여러 차례 왕명으로 공포되어 다양한 판본이 존재한다.

다. 이 법률은 흑인노예에 대한 배제적 포함을 전제하고 있는데, 흑인 노예는 왕국의 신민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주체도 아닌 오로지 법률의 대상일 뿐이었다. 흑인법에 나타나는 흑인노예를 역사적인 ‘호모 사케르’ (법외자)로 위치시키며, 프랑스 본국에는 인정되지 않던 노예제를 법률로 정당화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인 흑인법의 식민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왕령으로 공포된 이 법률은 생물학적 인종주의를 제도화한 최초의 근대적 인종법이라 평가된다. 반인륜적, 비인간적인 노예법의 시초로 혐오스럽고, 난폭한 폭력에 불과했다는 윤리적, 정치적 평가를 우선시하기보다는 흑인법이 제정되던 당시, 노예의 지위를 둘러싼 메트로폴리스의 왕권과 식민지 노예소유주의 갈등 속에서 노예의 지위를 다면적인 역사성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양심을 옹호하던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은 흑인법과 흑인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몽테스키외를 중심으로 흑인법과 흑인에 대한 시선을 검토해 볼 것이다.

2. 흑인법 제정: 루이 14세와 흑인법

대항의 시대 포르투갈인들에게 항해의 욕망을 불러일으킨 것은 황금을 찾고, 보리를 경작할 수 있는 토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랍의 정복자들로부터 8세기에 스페인으로 9세기에 포르투갈로 소개된 설탕이었다. 십자군 전쟁 시기에는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사탕수수는 점차 서쪽으로 재배지를 확대해 나아갔다. 사탕수수 재배에 적당한 키프로스, 시칠리아, 남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 기후는 설탕 산업을 촉진 시켜 나아갔다. 대항의 시대 포르투갈인은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카나리아, 마데리아 군도에서 사탕수수 농업을 일구었다. 사탕수수 재배 노동은 다른 농업노동에 비해 육체적으로 너무 고되었기 때문에 자영농은 기피했고, 항상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안고 있었다.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노예노동이 실행되고 있었던 시칠리아에서의 사탕수수 농장은 식민지 농장주에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신세계 개척에 필요한 노동력을 아프리카로부터 직접 공급하는 것이 시도되었다.⁷⁾ 이러한 해결책은 15세기에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로마제국 이래 중세에도 노예제는 미미하게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로마법을 상속한 중세 법체계에서 노예제는 법적

7) 보다 자세히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마르크 페로, 고선일 역, 「노예무역과 노예제에 관하여」, 『식민주의 역사: 16~21세기 말살에서 참회로』 (서울: 소나무, 2008).

근거를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반대하지 않았다. 포르투갈인들은 더욱 커진 설탕에 대한 욕망과 함께 노예를 찾아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땅으로 진출했다. 15세기 후반 이미 포르투갈인은 1년에 3천 명 정도의 노예들을 알가르브(Algarve)와 리스본항으로 수입하여 대서양 섬들에 필요한 노동력으로 이주시켰다. 이 시기 노예무역에서 무슬림 상인들과 아프리카 부족장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정복자의 권리라는 보편적 관습법 전통에 근거를 두고 있는 아프리카에서의 노예는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포로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노동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하층 농민의 지위와 유사했기 때문에 이른바 신대륙에서 행해진 노예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존재했다. 노예주에 소속된 존재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로마법과는 사물로 취급되는 것과는 달리, 아프리카의 전통적 관습법에 따라 노예는 여전히 인간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 단, 법적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었을 뿐이다.⁸⁾

포르투갈인이 주도한 노예무역은 1492년 ‘신대륙 발견’ 이후 본격적으로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무역의 경로도 확장되어갔다. 16세기 중반까지 노예무역은 주로 생 투메 섬의 플랜테이션과 유럽 시장 사이에서 나타났으나, 스페인의 아메리카 부왕령 설치(1524) 이후 본격적으로 신대륙 개발과 함께 최종 경로를 변경하였다. 1550년 리스본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던 노예들은 광산, 정원사, 농업노동, 선박 건조, 가사 노예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고 스페인에서는 각 가정에 1명의 노예를 보유했을 정도로 노예는 이베리아반도 곳곳에 존재하였다. 하지만 유럽에 정착한 노예들은 ‘신세계’의 노예들과는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흑인 노예들의 자녀는 세례를 받을 수도 있었다. 해방노예나 몰라토들도 사회적 역할을 자유롭게 수행할 정도로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아프리카계 이주자들은 세대를 거치면서 통합되었다. 이 시기 포르투갈과 스페인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이탈리아를 통해 남부지방에서 노예가 매매 되는 경우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노예는 왕국 내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세계’에서의 노예제는 유럽과는 전혀 달랐다. 스페인 본토에서는 인정되던 노예의 혼인권이 식민지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⁹⁾

8) Alain Testart, “L’ esclavage comme institution”, *L’ Homme*, 145(1998), p. 63.

15세기 중반 이후, 신대륙의 개발과 노예무역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이 커짐에 따라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1530년 후추와 황금을 찾아서 세네갈과 잠비아에 도착했지만, 종교전쟁으로 인한 정치, 사회적 혼란 때문에 일시적으로 식민지 건설은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7세기 초반 앙리 4세(Henri IV)가 가져다준 평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아메리카대륙으로 진출해서 캐나다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카리브해의 여러 섬에까지 식민지를 확장하였다. 1627년 리슐리외(Richelieu)는 몇몇 노르망디 인들을 생 크리스토프 섬(île saint christophe)과 과들루프(Guadeloupe)로 보내어 식민지 개척을 실험했을 즈음 프랑스 밀수업자들은 중간 기착지로 기안(Guyane)을 점령하였다. 리슐리외는 1635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모방한 ‘아메리카제도 회사’(Compagnie des Iles d’Amérique)를 창립하면서 해외 식민지 경영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리슐리외의 초기 식민지 개척 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은 계약노동자(‘Engagé’ 혹은 ‘trente-six mois’) 신분의 농업 이주민들이었다. 계약노동자 17세기 광범위하게 확산한 제도로서 왕의 명령에 따라 선박의 선장에게 지원자를 이송하게 하고 지원한 농민들은 36개월간 강제적으로 노동을 수행한 이후에야 자유민이 될 수 있게 하는 제도였다.¹⁰⁾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주자들은 토지를 사서 안착해 지대 납부자(censitaire), 즉 온전한 시민으로 자유를 회복해 정착하거나, 프랑스 본토로 귀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식민지 개발 초기 계약노동자로는 식민지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은 온전히 확보할 수 없게 되자 프랑스는 곧 노예무역으로 관심을 돌렸다.

설탕이 유럽에서 일상적인 식품으로 자리 잡힌 17세기 후반 노예무역도 마찬가지로 더욱 성행하였다. 설탕과 노예라는 두 개의 교역망은 식민지와 메트로폴리스의 의존적 관계 역시 발전시켰다. 설탕만을 생산하는 식민지는 모든 소비재를 식민모국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식민모국은 자신의 식민지에서 독점적인 공급자였다. 루이 14세의 재상인 콜베르(Colbert)는 이러한 보호무역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면서 모든 프랑스 식민지는 운송에 필요한 선박을 프랑스 선박만을 이용해야 했을 뿐 아니라,

9) Marc Cheb Sun ed., *L’histoire de l’esclavage et de la traite négrière: 10 nouvelles approches* (Paris: J’ ai lu, 2021), pp. 12-14.

10) 주경철, 『대항해 시대: 해상 팽창과 근대세계의 형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8), 340~342쪽.

프랑스 본토와만 교역하도록 강제했다. 콜베르는 더 공격적으로 프랑스 본토와 아프리카, 아메리카 사이의 무역에 독점적 지위를 보유한 서인도 회사(Compagnie des Indes occidentales, 1664), 세네갈 회사(Compagnie du Senegal, 1674), 기네회사(Compagnie de Guinée, 1683)를 창립하였다. 큰 규모의 식민지회사를 창립하기 위해 프랑스의 절대왕정은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큰 투자가 큰 수익을 낳던 상황에서 프랑스는 식민지회사를 통해 식민지 플랜테이션 생산에도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 밀수를 금지하기 위해 항구는 통제되어야 했고, 더욱 정확한 생산, 소비의 관리 기술은 동반되어 발전했다. 근대국가는 식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통치하고 경영하는 능력을 스스로 빠르게 습득해야만 했다. 이러한 가운데 17세기 후반 프랑스의 서인도 제도 식민지 인구에서 흑인 노예의 비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680년대 초에 대략 25,000명에 다다른 흑인 노예 수는 프랑스 본토에서 이주한 인구를 초과하기 시작하였다.¹¹⁾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프랑스 본토와 분리된 식민지였지만 서인도 제도의 플랜테이션 회사들은 프랑스의 일부였다. 양시앵 레짐 기간 서인도 제도를 지방으로 간주했지만, 입법 및 행정 관행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 프랑스는 식민지를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고 불확실한 결과를 낳을지라도 강경한 군사작전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9세기 초까지 카리브해는 프랑스가 관여한 모든 주요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영토이자 전쟁터였다. 설탕이 프랑스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수출품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서인도 제도의 상황은 프랑스 왕국의 불안을 낳았다. 늘어난 흑인 인구수를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던바, 1685년 흑인법은 콜베르의 주도로 제정, 공포되었다. 이것은 노예의 지위를 근대적 사법체계 속에서 규정한 최초의 시도이다. 동등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죽일 수 있는 자”, “희생물로 바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노예는 주권의 외부에 있는 호모 사케르였다. 노예주가 노예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호하고 노예주가 행사하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대적 법률이었다. 흑인법은 왕령으로 식민

11) Florence Gauthier, “L’ esclavage en héritage”, in Claude Liauzu ed., *Violence et colonisation* (Paris: Syllepse, 2003), p. 69.

지 모두에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1687년 앤틸러스 제도, 1704년 기안, 1723년 레위니옹, 1724년 루이지애나로 적용이 확대되어 갔다. 동시에 식민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농장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군사화(militarisation)는 진전되어 앤틸러스 제도의 섬들은 거대한 수용소(geoprison)로 변해갔다. 식민지의 행정관은 주로 군인이 임명되었고 식민자들로 구성된 자경단은 도망 노예를 찾거나 노예들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감시,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¹²⁾

뤼시앙 페이트로(Lucien Peytraud)가 1897년 출간한 『1789년 이전 서인도 제도의 노예제』(*L' Esclavage aux Antilles françaises avant 1789*)에서 1685년 콜베르가 흑인법을 만들었다고 서술한 이래 오랫동안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¹³⁾ 하지만, 마르티니크, 생 크리스토프, 과달루프에서는 흑인법 공포 이전인 1668년 이미 식민지 총독이 흑인법에 해당하는 칙령을 실행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해군성, 식민성 장관이자 재무 감사관 콜베르는 1681년 4월 30일 루이 14세의 이름으로 파톨레(Patoulet) 지사에게 전달하는 명령서에서 지방법 차원에서 노예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왕국의 법 공포를 위한 보고서를 요구했다. 1682년 5월 20일 지방법 차원에서 농장에서 경작하는 노예의 압류금지, 주인의 허가증이 있어야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제한 법 등이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1683년 파톨레의 후임자인 베공(Bégon)은 보다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콜베르에게 전달하였다. 이처럼 식민지 총독이 작성한 보고서가 흑인법의 초안이 되어 왕령의 바탕을 제공하였다. 콜베르가 1683년 9월 초 사망한 이후 그의 아들인 장 밥티스트 앙트완 콜베르(Jean-Baptiste Antoine Colbert)는 식민지 총독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왕령을 완성했다. 흑인법이 포함된 문서에 서명된 콜베르는 아버지가 아닌 아들이었고, 이것이 후대에 혼란을 가져와 흑인법의 작성자가 콜베르로 알려지게 되었다.

에릭 윌리엄스(Eric Williams)는 『카리브 제도의 역사』(*L' Histoire des Caraïbes, 1492-1969*)에서 “17세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제도적인 노예법은 1685년 3월 공포된 흑인법”이라 서술했다.¹⁴⁾ 하지만 실제 오늘날

12) *ibid.*, p. 73.

13) Lucien Peytraud, *L' Esclavage aux Antilles françaises avant 1789* (Paris: Libraire Hachette et Cie, 1897), p. 150, online: <https://gallica.bnf.fr/ark:/12148/bpt6k5470713x> (검색일: 2023년 10월 11일).

14) Eric Willans, *L' Histoire des Caraïbes, 1492-1969* (Paris: Editions

우리가 흑인법이라 부르는 것은 1718년에 제작되어 유포된 판본일 뿐이다. 1685년 왕령의 이름이 공식적으로는 흑인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속적으로 식민지에서 노예에게 적용되는 행정적, 사법적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흑인법이라는 별칭을 가지게 됐다.

한데, 왜 왕의 칙령이 법(code)로 불리게 되었을까? 루이 14세는 수많은 사법적 포고문 공표하였다, 1667년 민법에 관련된 명령은 루이 법(Code Louis), 1670년 형사 절차를 규정한 형사법(Code criminel), 1673년 육상에서의 상업에 대한 명령을 상법(Code marchand)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왕령을 모은 하나의 법률적 체계를 의미했기 때문에 법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루이 14세가 선포한 왕령을 법으로 부르는 관습으로 인해 흑인법은 법으로 불리게 됐다.¹⁵⁾

또한, 왕령의 수식어에 흑인(Noir)이 붙여진 것은 18세기 초부터 프랑스에서 흑인과 노예라는 각각의 단어에서 의미의 혼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흑인법에서 모든 흑인은 노예, 혹은 모든 노예는 흑인이라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다. 물론, 흑인이 노예라는 노예에 대한 인종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흑인법의 2조와 7조는 구체적으로 노예를 구매물(achat), 매매 흑인(marché des nègres)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흑인법이라는 이름은 다른 왕령들을 부르는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다. 1685년 왕령이 아닌 마스카렌 제도(iles Mascareignes)에서 공표된 ‘1723년 12월 왕령’ 과 루이지애나(Louisiane)에 공표된 ‘1724년 3월 왕령’도 흑인법으로 불렸다. 이러한 왕령들이 흑인법이라 불린 이유는 노예제도와 피부색에 따른 사법적 차별제도를 수립하고, 인종간 결혼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칙령들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흑인법은 1685년 왕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노예제도에 대한 사법적 질서를 총괄적으로 부르는 이름이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흑인법의 원판본으로 알고 있는 1743년 출간된 흑인법은 여러 왕령의 모음집(recueil)이다. 흑인법이라는 제목 발행된 모음집은 이후에도 1742년, 1767

Présence Africaine, 2000), p. 192.

15) Jean-François Nirot, *Le Code Noir: idées reçues sur un texte symbolique* (Paris: Le Cavalier Bleu, 2015), pp. 23-26.

년, 1788년 계속 출간되었다. 따라서 흑인법으로 불린 여러 왕령들의 공표는 식민지가 인종적 차별에 기초한 노예제 유지를 위해 계속 흑인법을 발전시켜 나아갔다는 것과 흑인을 배제하려 지속해서 법적 기초를 정비했음을 보여준다.¹⁶⁾ 흑인법은 한 번에 완결된 법률체계가 아니라 여러 차례 공표된 노예에 관련된 왕령의 총합이었다.

게다가 흑인법은 노예에게만 해당하는 법률이지 않았다. 6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통칭 흑인법은 노예에 대한 사법적 정의, 재판권 등을 포함하는 노예법으로만 정의할 수 없다. 먼저 가톨릭교회와 로마 교황청이 규율하는 식민지에서의 종교적 재판권(police religieuse)을 왕령으로 규정하였다. 흑인법의 최우선 목표는 식민지에서 프랑스의 영토와 자유민이건 노예이건 프랑스인에 대한 권한을 프랑스 왕이 행사한다는 데 있다. 앙리 4세가 프랑스 왕국 내 가톨릭이 아닌 위그노의 종교적 자유를 관용한 낭트 칙령은 1685년 10월 루이 14세가 폰텐블로 칙령(édit de Fontainebleau)을 공표함으로써 폐지됐다. 흑인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왕국 내 종교적 단일성을 확보하고, 해외 식민지가 프랑스 왕국의 일부이며 국왕의 주권 지배하는 땅임을 천명하는 왕령이었다.

흑인법의 1조는 1615년 4월 23일 유대인을 아메리카의 섬에서 추방하도록 한 왕령에서부터 시작됐다. 유대인은 기독교의 적(ennemis déclarés du nom chrétien)으로 선포되었고, 3개월 이내 자유민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유대인이면 식민지에서 부동산과 재산을 몰수, 추방하라고 왕령은 명시하고 있다. 중상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교적 관용을 표방하였던 콜베르가 사망한 직후인 1683년 9월 왕령으로 다시 확인하였는데 이미 왕령은 효력을 낳아 실행되고 있었다. 특히, 1683년 왕령은 1667년 예수회의 요청에 따라 바아스(Baas) 총독은 마티니크의 유대인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다시 공표된 것이었다. 한데, 실제로 당시 마티니크에 이주해온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브라질에서 망명해온 네덜란드계 개신교도들이었다. 총독은 유대교 안식일을 고수해 일요일에 노예들에게 노동을 시키는 유대인 농장주들을 고발했다. 유대인 농장주들은 현

16) 인터넷에서 code noir를 검색하면 출간된 여러 판본의 흑인법 표지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는 Le “Code Noir” selon les éditions Saugrain(1718); Le “Code Noir” selon les éditions Libraires associés; “Code Noir” selon les éditions Prault(1742) 등이 대표적이다.

지 지방 법률을 존중해 주일에는 노동을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난받았다.

흑인법은 2조는 노예에 대한 세례와 기독교인으로 교화시키는 것에 관련된 조항이다. 3조는 가톨릭 종교 활동 이외의 모든 공적 활동을 노예에게 금지했고, 4조에서 노예는 오직 가톨릭 농장주에게만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6조에서는 노예를 포함한 모든 식민지 신민들이 어떠한 조건에 놓여있던 가톨릭 축제와 주일 휴식을 준수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조항은 위그노와 관련된 6조이다. 앤틸러스 섬으로의 이주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개신교도들에게 가톨릭 신앙 활동을 자신들뿐 아니라 노예라고 할지라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제하고 있다. 1638년 7월 아메리카 식민지회사의 규정에 따라 식민화 초기부터 개신교도들의 이주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콜베르의 목인으로 다수의 위그노가 식민지에 정착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흑인법은 오로지 노예를 통치하기 위한 법률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하나의 왕, 하나의 신앙, 하나의 법(un roi, une foi, une loi)이라는 프랑스 왕의 주권을 식민지에서 다시 확인하는 법령으로서 의미가 칙령의 원칙이자 목표였다.

3. 흑인법을 통한 호모 사케르 만들기

2005년 ‘노예제 폐지 기념을 날’ 제정을 준비하던 위원회는 총리에게 “노예가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지위가 박탈된다는 것을 말한다. 프랑스는 흑인법으로 노예의 비인간적 조건을 본질로 만들었다” 라고 보고했다.¹⁷⁾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흑인법이 노예를 사물로 만들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결론내린 것처럼 프랑스에서 흑인법에 대한 지배적인 이미지는 노예의 인간성을 모두 박탈하고 흑인을 사물이나 동물로 전락시킨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법률을 대표한다. 이러한 흑인법에 대한 이미지는 신문, TV 등의 대중매체에서부터 개인의

17) France, “Mémoire de la traite nègrière, de l’ esclavage et de leurs abolitions”, *Rapport du Comité pour la mémoire de l’ esclavage au Premier ministres* (2005), pp. 11, 19.

인터넷 콘텐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유포되며 재현되고 있다. 2005년 토비라 법이 제정되고 첫 노예제 폐지 기념일이 시작되는 2006년 1월 시라크 대통령은 흑인법은 노예를 의자처럼 다루었다고 확인했다.

이와 같은 흑인법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는 1987년 살라-몰랭이 출간한 『노예법 혹은 가나안의 고난』이 가장 크게 이바지했다. 그는 책에서 흑인법을 “근대가 낳은 가장 괴물 같은 법률 내용”이라 주장했고, “각각 그리고 모든 흑인법의 조항은 참을 수 없는 추잡한 언사”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살라-몰랭의 흑인법을 분석하면서 두 결론에 다다랐다. 첫째, 그는 흑인법을 통해 사법적인 잔학성(monstruosité juridique)을 드러내고자 했고, 둘째, 노예를 동산의 한 종류, 혹은 사물로 정의한 흑인법 44조가 보여주듯이 흑인은 피부색을 통해 비인간화되어 도구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¹⁸⁾ 살라-몰랭을 흑인법 연구의 선구자로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흑인법 내용을 17세기 역사적 상황에 대한 세밀한 분석에 기초해 이해하지는 못하고 인간주의적, 도덕적, 반역사적 결론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비록, 흑인법은 노예를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노예에 대한 기독교 세례, 결혼, 해방 같은 내용도 전체 왕령이 포함하고 있어 각 조항의 모순성, 불일치성, 비일관성 등을 보이기 때문이다.

흑인법은 노예를 지배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기독교의 선교를 정당화했던 17세기에 제정된 문서로 오늘날 같은 근대적 법률관, 인간관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윤리적, 철학적인 가치에 기반한 평가는 정치적, 문화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이주당한 흑인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는 오히려 선부른 결론이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¹⁹⁾

17세기 프랑스 본토에서 노예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왕국의 땅에서, 기독교도의 영토에서 노예는 인정될 수 없었다.²⁰⁾ 1681년 콜베르는

18) Louis Sala-Molins, *Le Code Noir ou le calvaire de Canaan* (Paris: PUF, 1987), pp. 30-35.

1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Françoise Vergès, “Mémoires et patrimoines vivants de la traite négrière et l’ esclavage”, *In Situ: Revue des patrimoines*, 20(2013).

20) 전근대 프랑스에서 노예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힌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Sue Peabody, *There Are No Slaves in France: The*

노예, 노예무역에 대한 어떠한 왕령과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식민지에서의 노예무역과 노예제도는 완전히 새롭고, 만들어지는 중 인 법령이었다. 프랑스 왕은 왕국은 새로운 법령을 비준해 왕국의 권리를 식민지에서 만들어야만 했다. 식민지에서만 적용되는 예외적 법령을 통해 프랑스는 노예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었고, 1685년 흑인법은 식민지법의 기초와 원리를 제공했다.

흑인법에서 노예는 부동산, 사물에 불과한 재산이었지만, 동시에 인간 노예로서의 법적 인정을 받는 대상이었다. 모순적이고 정합적이지 못하지만, 사물화(chosification) 한 인간, 노예화한 인간이었다. 오늘날 근대적 인권 개념에는 이러한 지위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지만, 노예로서의 인간은 비자유민이고 노예의 신분에 놓여있지만, 인간(personne)이 아닌 존재는 아니었다. 인간을 사물과 동등하게 대할 수는 있지만, 인간이 사물이 아닌 것처럼 인간을 동물과 같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허상(fiction)에 지나지 않았다.²¹⁾

흑인법에서 노예는 인간이자 신민이 아닌 존재로서의 모순이 나타난다. 노예는 이성적인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존재이다. 흑인법 19조와 29조는 노예가 기른 동물이나 제작한 물건을 시장, 행상 등에게 판매하거나 밀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노예의 이성적 활동과 노동을 완전히 부정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 조항들은 노예가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행위들로 주인에 대한 의무, 복종을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데, 노예는 주인이 지배하고 있는 인간이지 동물이 아니다.²²⁾

물론, 노예가 매매되는 주인의 사유재산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노예의 권리를 주인이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왕의 칙령인 노예법의 적용을 노예주는 거부할 수 없었는데, 노예주는 이익을 위해 노예에게 경제적 활동을 장려하거나, 기술을 익히게 하는 등 노예를 잘 부릴 방법을 찾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부여된 의무였다. 노예주에게 노예를 유기

Political Culture of Race and Slavery in the Ancien Regim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21) C. Meillassoux, *Anthropologie de l'esclavage* (Paris: PUF, 1986), pp. 9-10.

22) Jean-François Nirot, *Le Code Noir: idées reçues sur un texte symbolique*, p. 56.

(abandonner)해서는 안된다는 의무가 부여되었다. 노예주는 노예에게 식량과 의복, 안식처와 보살핌을 제공해야 했다. 왕국의 법령이 정한 바대로 노예를 처벌해야 했기에 처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안정적인 플랜테이션 농장 운용을 위해 이론적으로는 노예를 보호했던 메트로폴리스의 왕령은 때때로 식민자들의 불만을 낳았다.

로마법에서도 노예는 사물(res)이었지만, 모든 인간성을 박탈하지는 않았다. 흑인법은 로마법에서 좀 더 나아가, 노예의 권리를 완전히 부정하던 노예 소유주의 불순한 의도에 대해 노예의 영적, 종교적 생활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였다. 노예는 동물이나 사물이 아니었기에 노예의 결혼은 흑인법 9조, 10조, 13조에서 정당하게 요구될 수 있었다. 하물며, 법적 문구에 불과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노예 남성과 자유민 여성 사이의 결혼도 허용되었다. 당연히 이러한 결혼은 실제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44개 조항이 포함된 흑인법은 노예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하는 노예 소유주의 절대적 법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노예 소유주의 처벌 권한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행사하는 권리인 반면, 폭행, 절도, 도주 등에 대한 형벌은 공적인 왕령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었다. 노예 소유주의 이익과 식민지의 공적 질서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했던 것은 아니다.

흑인법이 1685년에 공포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같은 해에 루이 14세는 낭트칙령을 폐지하는 칙령을 내렸다. 앙리 4세 이래 개신교도가 보유했던 신앙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다. 반종교개혁 시기 프랑스 가톨릭의 급진화는 흑인법의 1조~5조가 잘 보여준다.²³⁾ 흑인법 1조는 유대인을 식민지에

23) 1조. 우리가 숭배하는 지배자이자 아버지시며 고인이 된 뒤에도 길이 영광 속에 기억되는 국왕께서 1615년 4월 23일에 내리신 칙령을 우리 섬에서 집행하고자 한다. 고로 우리의 모든 관리들에게 우리 섬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섬 밖으로 쫓아낼 것을 명령하는 바이니, 기독교의 이름으로써 적으로 선고된 자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이 공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세 달 안에 여기서 나갈 것을 명령하며, 이 기한을 넘길 시에는 즉시 신체와 재산을 몰수할 것이다.

2조. 우리 섬에 오는 모든 노예들은 사도전승의 로마 가톨릭교의 영세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섬에 갓 도착한 새 흑인을 구매하는 주민들은 늦어도 8일 안에 그 사실을 섬으로 통칭되는 이곳의 총독과 지방 장관들에게 신고

서 추방할 것을 명령하고 있으며 2조에서는 노예에 대한 가톨릭 세례를 의무화하고 있다. 3조는 공공장소에서 가톨릭 이외의 모든 종교행위를 금지하고 4조는 노예 소유주의 신앙이 다를지라도 노예를 통제하는 노예 감독관(contremaître)은 가톨릭 신자여야 함을 노예 소유주에게 강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조에서는 개신교 노예 소유주의 경우 그들의 노예들에게 가톨릭 신앙 이외의 종교적 활동을 권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흑인법 1조에서 5조를 살펴보면 흑인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즉 노예는 프랑스 왕의 신민(sujet)인가? 라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왕령이 식민지 노예소유주와 행정관들에게 노예를 가톨릭화 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노예 역시 프랑스 왕의 신민임을 의미한다. 흑인법 내에서 노예는 교회를 통한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며, 유럽계 식민자와 동등한 ‘인간’이라는 형식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왜 노예가 되었는가?, 누가 노예가 되는가? 등에 대한 언급은 범조항의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흑인법의 다른 조항(55개)들에서는 노예에게 어떠한 인간적 지위와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노예주의 동의 없이 노예는 결혼할 수 없으며(11조) “노예 간에 결혼에서 태어나는 자식들은 노예가 될 것이며, 남편 노예와 아내 노인의 주인이 다르다면 자식들은 남편 노예의 주인이 아닌 아내 노예의 주인에게 속한다” 라고(12조) 규정하고 있다.²⁴⁾ 노예가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15조)²⁵⁾ 노예소유주가 다른 노예들간의 만남을 불법으로 규정(16조)한다.²⁶⁾ 또한, 사적인 사탕수수 판매(18조), 노예의 사적인

할 것을 명령하며, 그것을 어길 시에는 임의로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또한 총독과 지방 장관들은 적정 기간 안에 그 흑인들을 교육하고 영세를 줄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지시들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24) 13조. 남편 노예가 자유인 여자와 결혼했다면 그 자식들은 남자든 여자든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며 아버지의 노예 신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처럼 자유인임을 인정한다. 아버지가 자유인이고 어머니가 노예라면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노예임을 인정한다.

14조. 주인들은 영세 받은 노예들을 자신들의 몫으로 예정된 묘지 내의 신성한 땅에 매장하도록 한다. 그리고 영세 받지 않고 죽은 노예들의 경우에는 죽은 장소 근처의 들판에다 밤에 매장한다.

25) 15조. 노예들은 어떠한 공격 무기도 몸에 지닐 수 없으며 큰 몽둥이 역시 갖고 다닐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태형을 가하고 무기를 압류해서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한다. 단, 주인이 사냥을 보낸 노예와 증명서나 잘 알려진 표지들을 소지한 노예는 예외다.

소유물(28조)을 금지하고 있다.

노예는 사법적 보호를 자유민과 같이 받을 수 없다. 재판에서 증언할 수도 없고(30조, 31조) 노예가 노예주를 폭행하였을 경우 노예와 노예의 가족들은 자동적으로 사형에 처해져야 했다.²⁷⁾ 단순 절도의 경우에도 노예는 사형을 당할 수 있었고(35조), 밭에서 채소를 훔쳤을 경우 채찍질을 당하거나 낙인을 찍혔다(36조). 노예의 도주는 가장 무거운 형벌로 다스렸는데 도망을 시도한 노예는 처음에는 귀를 자르고, 또다시 도주를 실행한 경우 잡히면 오금을 자르고 세 번째는 사형을 당했다(38조). 식민지 노예주에게 노예의 사형은 재산의 손실을 의미했기 때문에 국가에 손해를 청구할 수 있었고, 동산(biens meubles)으로 취급당했기 때문에 노예주의 사망 시 상속될 수 있었다. 하지만, 교회에서 결혼한 노예가 가정을 이루었을 경우 부모와 자식의 분리 매매는 노예주에게 금지되었다(44조).

노예해방을 다루고 있는 55조에서 59조에서는 부분적으로 노예주의 의지에 따라 노예에게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흑인법에서 혼혈과 노예해방은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노예의 해방에 대한 흑인법의 규정들은 흑인노예에게 부여된 ‘배제적 포함’ (자유민/노예, 인간/재산)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어 준다. 흑인법에서 노예에게 언젠가 주어질 수 있는 ‘획득된 자유’ (liberté acquise)는 원칙적으로 ‘자연적 자유’ (liberté naturelle)의 수호자인 프랑스 왕에 의해 신민들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노예해방 정책은 왕국에서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다. 해방 노예의 경우 옛 주인에 대해 혹은 그 가족에 대한 사소한 실수라도 범했을 경우, 즉시 다시 노예로 전락할 수 있었고(58조) 직업과 의복, 가족생활의 자유는 제한당했다. 흑인 해방노예는 ‘흑인’ 일 뿐 결코 프랑스 왕국 내의 백인 신민들과 동등할 수 없는

26) 16조. 각기 다른 주인에게 속한 노예들이 결혼이나 다른 일을 핑계로 주인 중 한 사람의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밤이나 낮에 만나는 것은 금지하며, 대로나 외진 장소에서 만나는 것은 더더욱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태형이나 백합 낙인 이하의 신체적 처벌을 가한다. 또한 같은 죄를 빈번하게 범하거나 더 심각한 경우에는 사형을 시킬 수도 있는데 이것은 판사의 중재를 따른다. 우리의 모든 국민들에게 명령하는바, 비록 관리도 아니고 체포령을 소지하지 않았다 해도 위의 지시를 위반한 노예를 보면 쫓아가서 체포한 뒤에 교도소까지 데려가도록 한다.

27) 33조. 주인이나 여주인 혹은 여주인의 남편이나 그들의 자녀를 때려서 타박상을 입히거나 피를 흘리게 하는 노예는 사형에 처한다.

것이다. 피부색에 따른 사회적 신분구별은 식민지에서 백인 지배를 지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방노예에 대한 차별은 근대 생물학적 인종주의가 프랑스 식민지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톨릭교회에서 행해지는 노예에 대한 세례는 어떠한 자유도 보증하지 못했고, 왕은 위협을 무릅쓰고 세례를 위협하게 남용하지 말 것을 교회에 권고하였다. 세례는 구원에 대한 약속일뿐 자유에 대한 약속은 아니었다.

흑인법에서 가장 흥미로운 요소는 세세하게 흑인노예의 일상생활마저 규정하는 1685년 흑인법이 식민지에 적용되는 법률일 뿐, 메트로폴리스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노예제는 금지였고 자유를 약속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백인 주인을 따라 프랑스에 도착한 흑인노예는 자유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었다. 프랑스 영토는 곧 자유의 입구였다. 식민모국의 법률은 노예주가 노예(사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마치 법원에 의한 일시적인 권리박탈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권한을 잠정적으로 식민모국 영토 내에서 지위질(oublier)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노예소유주의 권리에 제한을 가했다. 따라서 노예소유주가 노예의 식민지에서의 출발과 식민모국에서의 입국에 대한 등록이 부재할 경우, 노예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주인의 허락을 받고 결혼한 경우, 마지막으로 노예주가 식민지로 영구히 귀환하지 않을 경우, 이상의 세 가지 경우에 노예는 자유를 획득할 수 있었다. 18세기 프랑스에 거주한 유색인 해방노예는 1000명에서 5000명 사이로 추정된다.²⁸⁾ 이러한 식민모국에서 자유를 회복할 기회도 1777년 유색인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프랑스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간주해 모든 식민지 유색인의 식민모국 입국을 금지하는 칙령이 반포된 이후 사라졌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흑인법은 기본적으로 식민지에서 두 개의 사회적 신분구분(자유민/노예)을 법률로써 규정하면서 ‘배제’(exclusion)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노예에게 ‘법외자’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초기 흑인법이 노예에 대한 폭력적 지배방식인 것은 분명하지만, 피부색 구분에 따른 인종주의적 차별을 제도화하는 법률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1685년 흑인법에서 해방노예의 후손들(manumis)은 자유민들과 동일한 사법적 지위를 인정받았고, 인종간의 혼혈은 가능했다. 혼혈로 태어난 생명에 자유인(ingénus)의 지위가 인정된 것에서 볼 때 흑인법이 혼혈을

28) Sala-Molins, *Le Code Noir ou le calvaire de Canaan*, p. 220.

허용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사실 이는 17세기 프랑스에서 이주해온 대부분의 식민자들이 미혼 남성이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들이 아프리카계 여성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식민지 개척의 초창기 이민 2세대의 경우 혼혈로 인해 태어난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17세기 흑인법의 인종주의적 성격은 실질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흑인노예와 혼혈 자유민의 인구수가 백인 인구를 압도적으로 우세해 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인종적 구분은 강화되었다. 1724년 새로운 흑인법에 이르러서야 완전한 혼혈을 금지하고 노예의 해방에도 더 많은 제한을 두는 법률조항들로 개정되었다.

4. 노예제도와 계몽주의

1700년을 전후하여 노예무역의 규모는 그 절정에 달했다. 강제로 이주해온 아프리카인들은 사탕수수, 커피, 목화, 인디고 등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일했다. 운이 좋은 노예는 주인의 가사 노예로 일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노예는 힘든 플랜테이션 노동에 배치되었다.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서 노예의 경우 농장과 사탕수수 가공소(moulin)에서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백인 감독관(commandeur)의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세 그룹(성인, 여성, 아동)으로 나뉘어 가혹한 노동을 수행했다. 농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른 노예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예의 저항 역시 빈번해지자 식민지는 잔혹한 형벌과 감시를 통한 ‘공포’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하였다. 노예주와 식민지 행정부의 노예반란에 강박증은 노예에 대한 폭력적 지배방식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했다.

식민지에서의 이러한 상황과는 반대로 메트로폴리스에서는 노예무역과 교역을 통한 부의 획득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열기가 뜨거웠다. 프랑스에서 노예와 설탕의 교역항이었던 낭트(Nantes), 보르도(Bordeaux), 라로셴(La Rochelle), 생-말로(Saint-Malo)에서는 수많은 수의 선박이 출입했다. 낭트의 유력 가문인 몽토도앵(Montaudoin)가는 1694년에서 1791년 사이에 357척의 교역선을 아프리카와 앤티리스 제도로 보냈다.²⁹⁾ 이러한 부의 증대는 화려함(luxe)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을 정도로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다. 교역항의 거리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사치스러운 물품이 넘쳐났다.

29) Delacampagne, *Histoire de l'esclavage*, p. 178.

급속히 증대한 사회적 부는 유럽이 근대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 시기에 등장한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새롭게 세계를 해석해 나아갔다. 몽테스키외를 비롯한 계몽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식민지의 효용과 식민지배에 대한 다양한 견해도 불구하고 노예제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⁰⁾ 대다수 프랑스인에게 노예는 보이지도, 만날 수도 없는 존재였다. 식민지 개척자들이 가진 전통적 기독교 관념에 의하면 노예일지라도 기독교도라면 자유로운 이교도에 비해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였다. 17세기 프랑스인은 이교도를 증오했고, 이단을 혐오하였으며, 자연적으로 열등한 야만인에 대해서는 공포를 쉽게 표출했다. 대다수 사람들은 흑인노예를 알지 못하는 먼 곳에서 온 ‘이방인’으로 취급하면서 이들이 가진 문화, 소속된 국가, 문명 등에 대하여 완전히 무관심했고 무시했다.

유럽인들에게 아프리카는 그리스-로마 시대 이래로 항상 무지와 환상의 대상이었다. 때로는 낙원으로 때로는 지옥으로 묘사되었다. 식민지 백인들은 성경 창세기 나오는 셈과 야벳의 후손들에게 가나안의 후손들은 영원히 노예(serviteur)로 봉사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저주에 근거하여 흑인노예의 존재를 정당화했다.³¹⁾ 성경에 노아의 후손들이 가진 피부색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의 왕국 거주민들이 가나안의 후손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아프리카인은 흑인이자 저주받은 노예가 되었다. 흑인노예는 사회적으로는 사물이나 동물에 불과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신의 피조물이자 세례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였다. 한편, 반종교적인 성향의 계몽주의자들은 인류다기원론에 근거하여 흑인의 노예화와 인종적 차별을 정당화했다. 박물학, 의학, 생물학, 광물학 등 신생과학에서 자연은 새로운 목록 속에서 분류되고, 식별되고, 정의되고, 이름 지워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인종에 따른 인간의 분류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식민지에서는 인구집단 전체를 가능한 한 엄격하게 계층화해야 했기에 피부색이라는 타고난 특성에 기준을 두고 새로운 인종집단들을 분류하고 이름을 개발했다.

30) Jean Meyer, *Esclaves et Négriers* (Paris: Gallimard, 1986), p. 132.

31) Sala-Molins, *Le Code Noir ou le calvaire de Canaan*, pp. 35-39.

프랑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몽테스키외(1689~1755)는 1748년 출간된 대표 저작인 『법의 정신』(L' Esprit des lois) 15권 「노예제의 법칙과 자연적 기후의 관계」(Comment les lois de l'esclavage civil ont du rapport avec la nature du climat)에서 노예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18세기 대다수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의 노예제에 대한 서술은 파편적이거나 미미하고 분석적이지 못한 것에 비하면, 몽테스키외가 많은 흔적을 남긴 것은 분명하지만, 이 글에서 그는 다른 계몽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노예제의 법적 기반인 흑인법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는다. 식민지에서 행해지고 있던 노예제에 대한 현실적 분석은 간략한 분량의 5장 ‘흑인노예에 대하여’ (De l'esclavage des nègres) 뿐이다.³²⁾ 『법의 정신』 15권은 전체적으로 중국, 아랍, 독일, 동유럽 등 세계 각국에 존재했던 노예제 일

32) 5조 ‘흑인노예에 대하여’ 는 다음과 같다.

Si j'avais à soutenir le droit que nous avons eu de rendre les nègres esclaves, voici ce que je dirais :

Les peuples d'Europe ayant exterminé ceux de l'Amérique, ils ont dû mettre en esclavage ceux de l'Afrique, pour s'en servir à défricher tant de terres.

Le sucre serait trop cher, si l'on ne faisait travailler la plante qui le produit par des esclaves.

Ceux dont il s'agit sont noirs depuis les pieds jusqu'à la tête; et ils ont le nez si écrasé qu'il est presque impossible de les plaindre.

On ne peut se mettre dans l'esprit que Dieu, qui est un être très sage, ait mis une âme, surtout une âme bonne, dans un corps tout noir.

Il est si naturel de penser que c'est la couleur qui constitue l'essence de l'humanité, que les peuples d'Asie, qui font des eunuques, privent toujours les noirs du rapport qu'ils ont avec nous d'une façon plus marquée.

On peut juger de la couleur de la peau par celle des cheveux, qui, chez les Egyptiens, les meilleurs philosophes du monde, étaient d'une si grande conséquence, qu'ils faisaient mourir tous les hommes roux qui leur tombaient entre les mains.

Une preuve que les nègres n'ont pas le sens commun, c'est qu'ils font plus de cas d'un collier de verre que de l'or, qui, chez des nations policées, est d'une si grande conséquence.

Il est impossible que nous supposions que ces gens-là soient des hommes; parce que, si nous les supposions des hommes, on commencerait à croire que nous ne sommes pas nous-mêmes chrétiens.

De petits esprits exagèrent trop l'injustice que l'on fait aux Africains. Car, si elle était telle qu'ils le disent, ne serait-il pas venu dans la tête des princes d'Europe, qui font entre eux tant de conventions inutiles, d'en faire une générale en faveur de la miséricorde et de la pitié ?

반의 역사에 대해 논하고 있을 뿐 노예제도 그 자체가 인간의 권리와 사회적 정의를 훼손하는 것임은 말하지 않는다. 그는 식민지 노예소유주의 폭력에 대해서는 흑인의 저항권은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적 긍휼(miséricorde)과 연민(pitié)의 의무만을 소유주에게 요구하였다. ‘만일 노예에 의해 설탕이 생산되지 않으면 설탕 가격은 비싸질 것이다’라고 서술한 점에서 몽테스키외는 식민지의 경제적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³³⁾ 노예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유용하고 효율적인 도구였다. 더불어 그는 노예의 도구화를 인종주의적 담론으로 정당화한다. 피부색이 인간 본성의 본질을 구성하고 흑인노예를 인간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기독교도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흑인의 피부색에 대한 기독교적 편견과 기후에 따라 인간의 본성이 다르다는 환경결정론을 동시에 이용해 인종적 구분과 차별을 합리화한 것이다. 또한, 흑인노예에 대한 남용(abus)과 위험(danger)을 다른 장에서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서 남용은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험은 흑인 노예의 수가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 스파르타를 인용하면서 헤일로타이(Hilotas)는 자연에 반하는 질서라고 인정하면서도, 노예 반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몽테스키외에게 흑인 노예제에 대한 비판은 발견할 수 없다. 그에게 노예란 주인에게 예측된 영혼이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로 이러한 동물과 같은 개체의 숫자가 사회에 많아지는 현상을 자연에 반하는 질서이자 전제정(despotisme) 사회의 특징으로 생각하였다.³⁴⁾

개인의 자유와 관용을 주장한 볼테르 역시 흑인법에 대해 무관심했다. 그는 인류다원론자인 동시에 인종주의자, 반유대주의자 이었다. 그는 백인과 흑인이 “완전히 다른 인종”이라는 사실이나 흑인은 원숭이와 결합해서 괴물 같은 존재를 낳을 수 있는 “동물”이라고 『여러 나라의 풍습과 정신에 관한 시론』(Essai sur les mœurs et l’esprit des nations)에서 쓰고 있다. 볼테르의 반종교적 성향은 교회와 유대인을 공격하는 동기가 된 한편 대자본가였던 그가 가진 경제적 이익에 대한 욕망은 인종주의적 인류다원론 통해 노예제를 옹호했던 배경이 되었다.

33) Laurent Estève, *Montesquieu, Rousseau, Diderot: du genre humain au bois d'ébène: Les silences du droit naturel* (Unesco, 2002), pp. 25-27.

34) Malick W. Ghachem, “Montesquieu in the Caribbean: The Colonial Enlightenment between “Code Noir” and “Code Civil”, *Historical Reflections*, 25-2(1999), pp. 183-210.

5. 결론

살라-물랭의 『노예법 혹은 가나안의 고난』 이후 연구가 본격화된 흑인법은 전문역사가들에게도 많은 역사적 쟁점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공론장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노예법은 콜베르가 칙령을 작성하고 입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는 왕령이 공포되기 2년 전인 1683년 사망한 관계로 단지 흑인법을 주창한 한 인물에 불과했다. 오히려 그가 사망한 이후 아들이 오로지 식민지에서만 지역적으로 흑인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법률안 발전시킨 최종안을 작성했다. 흑인법의 제정과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아있다. 1685년에 공포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더 늦은 시기에 제정됐다는 의심이 제기될 정도로 법안의 제정과 적용 과정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또한, 1685년 최종적으로 완성된 칙령이 오늘날 알려진 흑인법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왜냐하면 여러 판본의 흑인법이 발견되고, 각 판본에 포함된 법령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지역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시대별로도 다른 조항들이 법령을 탄력적으로 변화시켜 온 흔적이 나타난다. 흑인법이 과연 노예에게만 적용되는 칙령이었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흑인법은 식민지에서 치안을 위한 경찰 활동에 관계되는 법률로 종교적인 이단을 규제하는 법적, 정치적 수단이었다.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에서 역사 속에 존재한 여러 형태의 호모 사케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법과 주권의 한계를 서술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논의에서 주로 유럽사 내부에 한정되어 있고 실제적 대상 역시 유대인 수용소를 제외하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식민통치를 위해 제정된 흑인법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속의 범외자들은 메트로폴리스의 역사 보다는 식민지에서 그 뚜렷한 흔적이 발견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절대왕정 시기 프랑스 흑인법에서 흑인노예는 오로지 법의 통제와 형벌의 부과 대상이자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단, 재산이었다. 기독교와 인민의 자유를 수호하는 프랑스 국왕의 신민이라는 지위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아프리카 강제이주자들은 흑인과 노예라는 이중적 억압기제 속에서 끊임없이 배제되고, 포섭되는 대상이었다. 흑인법의 반인간성, 반인륜성, 반기독교성 등 인간주의적 노예제도에 대한 해석은 노예법에 대한 공분을 불러

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 하지만 노예무역, 노예제도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인간주의적 해석은 윤리적, 철학적으로는 의미가 무거울지라도, 지배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방해한다. 흑인노예를 호모 사케르로 만든 흑인 법은 근대 주권권력이 식민지에서 생물을 죽음의 권력에 종속시키고 내버려짐의 관계속에 노출 시켰다. “오랫동안 주권 권력의 특징적인 특권 중 하나는 바로 생사를 결정하는 권리였다”³⁵⁾라는 푸코의 명제는 식민지 흑인노예를 대상으로 적용된 흑인법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따라서 식민지에서 흑인, 원주민은 배제/포함, 외부/내부, 비오스/조예의 경계에 놓여있는 호모 사케르였고, 식민모국의 주권은 이들을 배제적으로 포섭했다.

근대적 자유주의의 기원을 만들어낸 계몽주의자들은 인권을 위협하는 종교와 절대왕정에 대해 투쟁하면서도 식민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강제이주자들의 비극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무관심했다. 결국 노예제의 발달과 계몽주의자들이 발견한 인간의 권리는 역사의 우연이라기보다는 조건이 아닐까? 식민지에서 메트로폴리스에 대항하는 백인 이주자들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자유를 옹호하는 사상을 발전시킨 원인이었다면 이러한 원인의 조건은 비인간으로 취급되었던 아프리카 강제이주자들의 희생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을 통해 다시 ‘인간’ 혹은 ‘주권자’란 무엇인지를 사고하기 시작하였다.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 칼리지 초빙교수, mentend@gmail.com

주제어(Key Words):

호모 사케르(Homo sacer), 흑인법(Code noir), 식민주의(Colonialism), 노예제(Slavery)

투고일: 2023.10.26. 심사일: 2023.11.20. 게재확정일: 2023.11.23.

35) Michel Foucault, *Histoire de la sexualité: La Volonté de savoir* (Paris: Gallimard, 1994), p. 119.

<국문초록>

흑인법(code noir)의 식민지성: 호모 사케르 만들기

문 중 현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에서 역사 속에 존재한 여러 형태의 호모 사케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법과 주권의 한계를 서술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논의에서 주로 유럽사 내부에 한정되어 있고 실제적 대상 역시 유대인 수용소를 제외하면 명확하게 가시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식민통치를 위해 제정된 흑인법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속의 범외자들은 메트로폴리스의 역사 보다는 식민지에서 그 뚜렷한 흔적이 발견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절대왕정 시기 프랑스 흑인법에서 흑인노예는 오로지 법의 통제와 형벌의 부과 대상이자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단, 재산이었다. 기독교와 인민의 자유를 수호하는 프랑스 국왕의 신민이라는 지위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아프리카 강제이주자들은 흑인과 노예라는 이중적 억압기제 속에서 끊임없이 배제적 포섭의 대상이었다. 흑인법의 반인간성, 반인륜성, 반기독교성 등 인간주의적 노예제도에 대한 해석은 노예법에 대한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 하지만 노예무역, 노예제도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인간주의적 해석은 윤리적, 철학적으로는 의미가 무거울지라도, 지배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방해한다. 흑인노예를 호모 사케르로 만든 흑인법은 근대 주권권력이 식민지에서 생물을 죽음의 권력에 종속시키고 내버려짐의 관계속에 노출 시켰다. “오랫동안 주권 권력의 특징적인 특권 중 하나는 바로 생사를 결정하는 권리였다” 라는 푸코의 명제는 식민지 흑인노예를 대상으로 적용된 흑인법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따라서 식민지에서 흑인, 원주민은 배제/포함, 외부/내부, 비오스/조예의 경계에 놓여있는 호모 사케르였고, 식민모국의 주권은 이들을 필요로 했다.

근대적 자유주의의 기원을 만들어낸 계몽주의자들은 인권을 위협하는 종교와 절대왕정에 대해 투쟁하면서도 식민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강제이주자들의 비극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무관심했다. 결국 노예제의 발달과 계몽주의자들이 발견한 인간의 권리는 역사의 우연이라기보다는 조건이 아닐까? 식민지에서 메트로폴리스에 대항하는 백인 이주자들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자유를 옹호하는 사상을 발전시킨 원인이었다면 이러한 원인의 조건은 비인간으로 취급되었던 아프리카 강제이주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을 통해 다시 ‘인간’ 혹은 ‘주권자’란 무엇인지를 사고하기 시작하였다.

<Abstract>

The Coloniality of Code noir: Making Homo sacer

MOON Jong-Hyun

In *Homo sacer*, Agamben describes the limits of law and sovereignty within which the various forms of homo sapiens that have existed in history were bound to occur. His discussion is largely confined to European history, and the tangible objects are not clearly visible, except for the Jewish concentration camps. However, as the black laws enacted for colonial rule demonstrate, those outside of history cannot deny that they have a distinct trace in the colonies rather than in the history of the metropolis. In the French black codes of the ancien régime, black slaves were exclusively subjects of the law and the imposition of penalties, a means of providing labour, and property. Despite their status as subjects of the French king, defenders of Christianity and people's freedom, African forced migrants were constantly subject to exclusionary inclusion in a double system of oppression: blackness and slavery. Humanist interpretations of slavery, such as the anti-humanity, anti-relationship, and anti-Christianity of the Black Codes, are enough to provoke outrage against slavery. However, humanist interpretations of the history of the slave trade and slavery, while ethically and philosophically meaningful, prevent a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domination. The Black Codes, which turned black slaves into homo sapiens, exposed modern sovereign power in the colonised world to a relationship of subordination and abandonment to the power of death. "One of the characteristic prerogatives of sovereign power has long been the right to determine life and death," Foucault's proposition is nowhere more evident than in the black laws applied to colonial black slaves. Thus, in the colonies, blacks and indigenous peoples were homo sapiens on the edge of exclusion/inclusion, outside/inside, bios/zoos, and the sovereignty of the colonial motherland needed them.

The Enlightenment, which produced the origins of modern liberalism, struggled against religion and absolute monarchies that threatened human rights, while remaining largely indifferent to the tragedy of African forced migrants in the colonies. In the end, the development of slavery and the Enlightenment's discovery of human rights were conditions rather than accidents of history: if the will to freedom of white migrants in the colonies against the metropolis was the cause of the development of pro-freedom ideas, then the condition of this cause was the sacrifice of African forced migrants who were treated as non-humans. And above all, it was through them that we began to think again about what it means to be a 'human being' or a 'sovereign'.

참고문헌

1. 사료

Code noir, ou Recueil d'édits, déclarations et arrêts concernant les esclaves nègres de l'Amérique, avec un recueil de réglemens concernant la police des isles françoises de l'Amérique et les engagés (Paris: chez les libraires associez, 1743), online: <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86086055.r=code%20noir?rk=21459;2#> (검색일: 2023년 7월 10일).

2. 단행본

마르크 페로, 고선일 역, 「노예무역과 노예제에 관하여」, 『식민주의 역사:16~21세기 말살에서 참회로』 (서울: 소나무, 2008).

염운옥, 『낙인찍힌 몸-흑인부터 난민까지, 인종화 된 몸의 역사』 (서울: 돌베개, 2019).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서울: 새물결, 2008).

주경철, 『대항해 시대: 해상 팽창과 근대세계의 형성』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8).

Boulle, P. H., *Race et esclavage dans la France de l' Ancien Régime* (Perrin, 2007).

Delacampagne, Christian, *Histoire de l' esclavage* (Paris: Le Livre de poche, 2002).

Foucault, Michel, *Histoire de la sexualité: La Volonté de savoir* (Paris: Gallimard, 1994).

France, “Mémoire de la traite négrière, de l' esclavage et de leurs abolitions” , *Rapport du Comité pour la mémoire de l' esclavage au Premier ministres* (2005).

Gauthier, Florence, “L' esclavage en héritage” , in Claude Liauzu ed., *Violence et colonisation* (Paris: Syllepse, 2003).

Jaubert, P. “Le Code noir et le droit romain” in *Histoire du droit social*, Mélanges J. Imbert (Paris: PUF, 1989).

Meillassoux, Claude, *Anthopologie de l' esclavage* (Paris: PUF, 1986).

- Meyer, Jean, *Esclaves et Négriers* (Paris: Gallimard, 1986).
- Nirot, Jean-François, *Le Code Noir: idées reçues sur un texte symbolique* (Paris: Le Cavalier Bleu, 2015).
- Peabody, Sue, *There Are No Slaves in France: The Political Culture of Race and Slavery in the Ancien Regim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Peytraud, Luicien, *L' Esclavage aux Antilles françaises avant 1789* (Paris: Libraire Hachette et Cie, 1897), online: <https://gallica.bnf.fr/ark:/12148/bpt6k5470713x> (검색일: 2023년 10월 11일).
- Sala-Molins, Louis, *Le Code Noir ou le calvaire de Canaan* (Paris: PUF, 1987).
- Sun, Marc Cheb, ed., *L' histoire de l' esclavage et de la traite négrière: 10 nouvelles approches* (Paris: J' ai lu, 2021).
- Willans, Eric, *L' Histoire des Caraïbes, 1492-1969* (Paris: Editions Présence Africaine, 2000).

3. 논문

- 문중현, 「탈식민시대 프랑스의 노예제 기억과 역사 - ‘노예무역, 노예제, 노예제폐지 기념의 날’ (Journée nationale des mémoires de la traite, de l' esclavage et de leurs abolitions)을 중심으로-」, 『프랑스사 연구』, 48호(2023).
- Dubois, Laurent, “Histoires d'esclavage en France et aux États-Unis”, *Esprit*, 2(2007).
- Ghachem, Malick W., “Montesquieu in the Caribbean: The Colonial Enlightenment between “Code Noir” and “Code Civil”, *Historical Reflections*, 25-2(1999).
- Testart, Alain, “L' esclavage comme institution”, *L' Homme*, 145(1998).
- Verges, Françoise, “Mémoires et patrimoines vivants de la traite négrière et l' esclavage”, *In Situ: Revue des patrimoines*, 20(2013).